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46

발의연월일: 2024. 7. 9.

발 의 자:신장식・김준형・이성윤

서왕진 · 김재원 · 조 국

차규근 • 이해민 • 김선민

황운하 • 박은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 는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법 파견 또는 위장 도급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인지하 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92호신설).

법률 제 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9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